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91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13호)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38호)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53호)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60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7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7
2.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추가	20

I. 개요

【 고동진 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2.
3. 회부연월일: 2025.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던 가운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 박덕흠 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2.
3. 회부연월일: 2025. 2. 1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학교 내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임용 기준이 없고, 교원이 근무 중 위험 징후가 나타나도 현장에서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강제성과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17개 시·도교육청이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교육청은 2015년 관련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만큼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및 제43조의3 신설 등).

【 강경숙 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3.
3. 회부연월일: 2025. 2. 1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 김기현 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4.
3. 회부연월일: 2025. 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초·중등 교원을 비롯한 약 2만여 명의 교육 종사자가 학부모 민원 및 추락한 교권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겪던 교원이 복직 한 달 만에 해당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여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바 있음. 해당 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육청에 휴직 신청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재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부산·경기·충북·경북의 경우에는 위원회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 고 민 정 의 원 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고민정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4.
3. 회부연월일: 2025. 2. 1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회 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회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각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규칙 등으로 규정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질환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① 고동진의원안 제44조의3, ② 박덕흠의원안 제2조제12항 및 제43조의3, ③ 강경숙의원안 제44조의3, ④ 김기현의원안 제45조의2, ⑤ 고민정의원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현 행	① 고동진 의원안
<신 설>	제44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정신장애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이하 “질환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 구성 및 운영한다.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제1항의 심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병가 또는 휴직 승인을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③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학교의 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의 질환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심의는 의사의 진단서, 학교의 장 의견서,

현 행	① 고동진 의원안
	<u>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u> <u>⑥ 제4항의 심의를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⑦ 위원회는 해당 교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u> <u>⑧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및 법률 등의 전문가, 교직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 <u>⑨ 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u> <u>⑩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또는 “교육감 자체처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직무수행에 문제없음” 등으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u> <u>⑪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교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 <u>⑫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 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⑬ 교육감은 해당 교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u> <u>⑭ 재심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⑮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⑯ 그 밖에 질환교원의 기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기준 및 절차, 의견청취, 재심의,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 행	② 박덕흠 의원안	③ 강경숙 의원안
제2조(정의) ① ~ ⑪ (생략) <신설>	제2조(정의) ① ~ ⑪ (현행과 같음) <u>⑫ 이 법에서 “질환교원”이 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 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 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u>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 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2. 「사립학교법」 제59조제 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8 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분 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신설>	제43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 회 운영) ① 정신적·신체 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 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 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은 교육감으로 하며, 위원 은 교직단체 또는 학부모단 체에서 추천한 사람, 의료전 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교 육감이 위촉한다.	제44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 회 설치 및 운영) ① 질환 교원의 근무 적합성 여부 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감 소속으 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질환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교원 2. 「국가공무원법」 제70 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교원

현 행	② 박덕흠 의원안	③ 강경숙 의원안
	③ <u>질환교원 심의에 의학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산하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④ <u>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u> ⑤ <u>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질환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u> ⑥ <u>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교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 ⑦ <u>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교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고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교육감은 이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④ <u>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 행	④ 김기현 의원안	⑤ 고민정 의원안
제7장 신분보장 · 징계 · 소청 <u><신 설></u>	제45조의2(복직 등)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은 각 시·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따라 복직 또는 근무 중인 교원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직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심사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신분보장 · 징계 · 소청 등 제52조의2(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교원(이하 “질환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그 밖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질환교원의 심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질환교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의

현 행	④ 김기현 의원안	⑤ 고민정 의원안
		<u>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u> <u>②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교육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및 해당 교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 심의 절차 및 결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2조의4(결과 처리) ① 교육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2조의5(복직 심의) 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복직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질병휴직 등의 필요성, 복직 후 직무 감당 불능에 따른 직권 면직 해당 여부 등의 심의 또는 의견 청취를 위해 각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한 질병휴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표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 심의 등 관련 위원회 현황

구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근거	• 각 교육청별 규칙	•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교육부 예규)
운영	• 서울 등 13개 교육청 * 부산, 경기, 충북, 경북 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음	• 전체 17개 교육청
심의 대상	• 전체 교원 중,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아래 조항 해당 교원	• 교육공무원 중, 아래 조항 해당 여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58조제1항제1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7호의3(난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주: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자료: 교육부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준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에서는 2022년 4건, 2023년 20건, 2024년 41건, 2025년 2월 기준 5건이 심의되었고,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교육청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 심의 관련 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2.	합계
서울	-	2	5	-	7
부산	-	1	-	-	1
대구	-	-	-	-	0
인천	2	2	9	1	14
광주	-	-	-	-	0
대전	-	-	-	-	0
울산	-	1	2	-	3
세종	-	-	-	-	0
경기	-	2	3	-	5
강원	-	-	-	-	0
충북	-	1	6	2	9
충남	-	3	3	-	6
전북	2	3	3	1	9
전남	-	-	1	-	1
경북	-	2	8	-	10
경남	-	-	1	1	2
제주	-	3	-	-	3
합계	4	20	41	5	70

주: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 심의건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교육부

위원회 심의건수가 적은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휴직을 명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거나, 휴직 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하여 면직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해당 사안의 심의나 의견청취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질환교원이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각 개정안은 질환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질환교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해당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각 개정안의 조문 체계는 아래와 같음.

현행법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부분에서 ① 고동진의원안과 ③ 강경숙의원안은 ‘제44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을 규정하고, ② 박덕흠의원안은 같은 부분에 ‘제43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④ 김기현의원안은 ‘제45조의2(복직 등)’을 규정함.

한편, ⑤ 고민정의원안은 장의 제목을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등’으로 변경하고, ‘제52조의2(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2조의3

(질환교원의 심의), 제52조의4(결과 처리), 제52조의5(복직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질병휴직 등의 필요성, 복직 후 직무 감당 불능에 따른 직권 면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개정조문의 위치는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에 포함하고, 해당 조문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제목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① 고동진의원안, ③ 강경숙의원안).

다만,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조문별로 단계를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⑤ 고민정의의원안).

장 구분	주요조항	개정·신설조항	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3장 자격, 제4장 임용, 제5장 보수, 제6장 연수			
제7장 신분보장 · 징계·소청 등 * 고민정의의원안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43조의2 당연퇴직 제44조 휴직 제44조의2 직위해제 제45조 휴직기간 등 제46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43조의3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②박덕흠의원안 (제8113호)
		제44조의3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고동진의원안 (제8091호)
		제44조의3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③강경숙의원안 (제8138호)
		제45조의2(복직 등)	④김기현의원안 (제8153호)
		제52조의2(질환교원심의 위 원회의 설치) 제52조의3(질환교원의 심의) 제52조의4(결과 처리) 제52조의5(복직 심의)	⑤고민정의의원안 (제8160호)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제9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제10장 별칙			

다음으로, 각 개정안은 **질환교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① 고동진의원안(제44조의3제1항)은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 정의하고,

② 박덕흠의원안(제2조제12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교원으로 정의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 현행법 제44조제1항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¹⁾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③ 강경숙의원안(제44조의3제2항)은 현행법 제44조제1항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④ 김기현의원안은 질환교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⑤ 고민정의원안은 해당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각 개정안 중에서 ② 박덕흠의원안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안 제43조의3)과 별도로 현행법에서 정의를 규정한 제2조에 항을 신설하여 질환교원을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법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안 제43조의3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를 분

1)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음. 다만,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내용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직권 면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리하여 규정할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이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안 제43조의3에 질환교원의 정의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질환교원을 정의하는 각 호의 내용으로 ② 박덕흠의원안은 현행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규정하고, ③ 강경숙의원안은 현행법과 「국가공무원법」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호의 내용에는 현행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③ 강경숙의원안).

참고로,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적합성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상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적용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137호, 2025.2.13.)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므로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각 개정안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고동진의원안(제44조의3제1항), ② 박덕흠의원안(제43조의3제1항), ③ 강경숙의원안(제44조의3제1항), ⑤ 고민정의원안(제52조의2제1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질환교원의 교직수행 등

의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다음의 개정안에서는 복직 심의 기능도 규정하고 있는데, 각 개정안별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휴직을 살펴보면, ④ 김기현의원안(제45조의2제3항)은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이유로 한 휴직, ⑤ 고민정의의원안(제52조의5제1항)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휴직을 규정하고 있음.

⑤ 고민정의의원안에서 복직 심의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해, 복직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④ 김기현의원안의 경우에도 정신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유사한 취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당 개정안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으로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각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결과통지 및 이의제기,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

2)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령 사례는 【참고자료 1, 위원회 관련 법령】 참조

2.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추가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임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박덕흠의원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4. (생략) <u><신설></u>	제10조의4(결격사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 제10조의4는 결격사유³⁾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제2호),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제3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제4호)가 있음.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면서도, 전문의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⁴⁾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개정안은 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학교의 교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⁵⁾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⁶⁾

또한, 개정조문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인 교육공무원에는 교원, 조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 해당되며,⁷⁾ 「사립학교법」에서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⁸⁾ 개정안에

4)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6)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7)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8)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따를 경우, 정신질환자는 모든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됨.

따라서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판단하는 기준과 전문의가 교육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기준 등이 보다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9

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참고자료>

1. 위원회 관련 법령

-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하 생략)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내용 생략) 제14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내용 생략)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내용 생략)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내용 생략)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u>회의를 소집</u>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u>전문가</u>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u>의견</u>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u>위원</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u>교육장</u>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u>위원</u> 중에서 <u>교육장</u>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u>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u>위원</u>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u>위원</u>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u>위원</u>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